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안
번호

2002-24

제출년월일 : 2002. 4. 3.

제 출 자 : 최정의 의원의 명

1. 제 정 이 유

- 당초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은 의원 임기중 1회 기준으로 시행하였던 것이
-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효율을 기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 요 골 자

-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
-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참 고 사 항

-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권고(안)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원이 제2조 1호 내지 제2호,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촉한다.

1. 2인의 위원은 김제시의회의 부의장과 의원 1명을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관내 대학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3. 1인의 위원은 관내 사회단체 대표중에서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제시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다.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의여행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의여행을 하고자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결과통보)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부결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12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의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의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하여야 한다.

제 13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일간)						
여행자 및 경비 내역						
성명		성별	연령	소속및직위	여행경비	
한	문				금액(천원)	부담기관

2. 여행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3. 여행경비 산출내역

성명	계	항공운임	체제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여행 효과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자

(인)

김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 귀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 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 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 차 구 성 "예시"

- I.(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 세부내용 등
- II.(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자료의 분석내용 등
- III.(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 IV.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첫장(겉표지)에는 제목· 제출년월· 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0 0 0 제도
(제목)

0 0 년 0 월
(월까지만 표시)

0 0 0 의 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인적사항 : (2인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 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 법령· 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단체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地方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準則)案

-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급 의회규칙으로 자율적 제정 필요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의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의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의여행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의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10인미만(최소 규모의회는 의원정수를 감안하여 당해 의회에서 인원수준 적의 조정가능)의 지방의 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실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이 내에 별지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 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일간)					
여행국						
여행자	소속 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원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결속의견인용 (직책 포함)
	서울				
		서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재비			준비금	프우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여행효과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이상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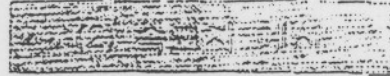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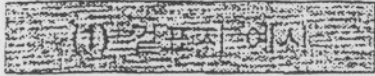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작성요령

- I.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자료의 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
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첫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년월·소속위원회,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



<보고서>

○○○○제도
(제목)

○○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근외여행 개요

1. 여행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예산편성지침안)

□ 경비의 성격

- 지방의회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 편성기준

- ① 원 칙 :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제시

구 분	편성한도액 (연간)	
시·도	의원 : 1,800천원 이내	의장·부의장 : 2,500천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원 : 1,300천원 이내	의장·부의장 : 1,800천원 이내

- ② 예 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제1항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